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. 10. 11 선고 2015가단2594 판결 [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6. 9. 27.

판결 선고 2016. 10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,041,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6. 20.부터 2016. 10. 11.까지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1/2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2,082,16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피고가 1999. 6. 30. 경주시 C 답 231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,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·미등기 주택과 다용도실(이하 '이 사건 주택'이라 한다)을 소유한 사실, 원고와 D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5. 6. 4.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/2 지분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, 그 후 원고는 2016. 3. 24.경 경주시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, 2015. 6. 4.부터 2016. 3. 24.까지의 이 사건 토지 임대료는 2,082,16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,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, 감정인 F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2015. 6. 4.부터 2016. 3. 24.경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, 그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중 1/2 지분을 소유하였던 원고에게 임대료 중 1/2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대료 중 1/2 상당액인 1,041,080원(= 2,082,160원 × 1/2)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5. 6. 20.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. 10. 11.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원고는 2015. 6. 4.부터 2016. 3. 24.까지의 임대료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나 토지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, 위 인정범위를 넘는 청구는 이유 없다. 또 원고가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연 15%를 초과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박은진